



# 차이나

CHINA Legal Information

## 법률 정보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北京渡正律师事务所  
Beijing Duzheng partner law firm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구체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공지 드립니다.

## 중국의 新회사법

### 1 배경

- 2023년 12월 29일, 제14기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23년 개정)> 개정법이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회사법>은 1993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99년, 2004년, 2005년, 2013년, 2018년 5차례에 걸쳐 수정을 진행, 금번 발표한 신규 <회사법>은 제6차 개정법임
    - 특히, 2005년에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회사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립했고, 2023년은 2005년 이후 두 번째로 해당 법안을 전면 개정했다고 평가받음
  - 금번 회사법 개정은 2018년에 중국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었고, 2019년부터 정식 수정작업이 시작되면서 5년 동안 총 3회 의견수렴, 4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통과 하였음
  - 개정법은 총 15장 266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기존 법규 대비 16개 조항을 삭제, 228개 조항을 추가 및 수정함

## 1) 회사 등록자본금 제도의 변경

- 유한책임회사 설립 후 등록자본금 5년 내 완납 필요(제47조, 266조)
  - 개정 전 회사법은 주주가 회사에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의 출자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정관에 명시한 기한에 따라 납입하도록 함. 반면 개정법 제47조는 회사의 주주들이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자본금을 완납하도록 규정
  - 또한, 제266조는 개정법 시행일(2024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의 출자 기한이 개정법의 기한을 초과한 회사는 개정법에서 규정한 기한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도록 함
- ‘주주 권리 실격제도’ 신규 추가(제51조, 제52조)
  - 등록자본금을 5년 내 완납해야 한다는 출자 기한 설정 및 주주가 기한 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주 권리 실격제도를 도입함
  - 제52조에 따라 유한회사 설립 후 주주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약정한 기한(최대 5년 이내)까지 출자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주주에게 독촉하고 최소 60일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음.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도 주주가 여전히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주주에게 주주권리 상실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상실된 주주의 권리는 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등록자본금을 축소 또는 해당 지분을 말소해야 함. 6개월 내 양도, 축소 또는 말소하지 않을 경우, 기타 주주들은 본인의 출자 비율에 따라 해당 출자 금액을 완납해야 함
  - 관련 법률 책임으로 개정법 제252조에 따라 주주가 기한 내 출자하지 못하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중한 경우에는 미출자 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또한 주주가 기한 내 출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안을 직접 책임진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주주 등록자본금 출자 조속화(제54조)
  - 회사가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회사 또는 만기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출자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출자 주주에게 등록자본금의 사전 납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미완납 자본금이 있는 경우, 지분 양도인 및 양수인의 책임 강화(제88조)
  - 주주가 양도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등록자본금 출자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출자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해당 출자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양수인이 기한 내 출자 금액을 완납하지 못하면 양도인은 양수인이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한 출자금에 대해 보충 책임을 부담해야 함
- 불균등 감자 제도 신규 추가(제224, 제225조)
  -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축소하는 경우, 주주의 출자 또는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출자액 또는 주식을 감소해야 함. 다만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주주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즉 주주 간 약정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불균등 감자가 가능하게 됨. 감자 시, 주주결의를 통해 10일 이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또한 30일 이내 신문 또는 시스템에 공시해야 함. 채권자는 통지 수취 후 30일 이내, 통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 일자로부터 45일 이내 회사에 채무청산 또는 담보제공 요구 가능
- 주식유한회사 ‘수권자본제도’ 첫 도입(제152조)
  - 주주 또는 회사정관은 이사회에 수권하여 3년 내 기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이는 금번 개정법에서 처음 도입한 내용으로 주식유한회사의 설립, 주식 발행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음
    - \* 기발행주식이란 주식회사 등이 설립되었을 때 발행한 주식을 뜻하며 기발행주식은 법정 자본금을 구성
- 자본적립금의 결손보전 제한 취소(제214조)
  - 기존법은 자본적립금은 회사의 결손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개정법은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결손을 여전히 보전하지 못한 경우 자본적립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규 규정

## 2) 주주의 권리 범위 명확히 제시

- 주주총회 결의 및 철회 조건 보완(제26조)
  - 기존법은 주총 결의 후 60일 내, 주주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철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주주가 총회 개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의 권리보장에 어려움을 겪었음. 이에 개정법에서는 주주총회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1년 내 철회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주 우선 구매권 절차 명확히 제시(제84조)
  - 기존법 제71조에 의하면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반대 주주는 양도 지분을 매입해야 하고,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 반면 개정법에서는 상기 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양도 주주는 양도 대상 지분의 수량, 가격, 지급 방식 및 기한 등 사항을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하고, 다른 주주들은 통지를 받은 후 직접 우선매수권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
- 주주 알권리 확대(제57조)
  - 기존법에 의하면 주주는 회사의 정관, 주주회의 기록, 감사회 결의록, 재무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개정법은 추가로 주주명부도 열람 및 복사 가능하도록 규정함
  - 기존에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추가로 회계증빙의 열람도 요청할 수 있게 됨. 주주의 알권리는 회계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 등에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 지배주주의 권리남용에 대한 신규 규정(제89조)
  - 개정법은 지배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소주주는 환매를 요구할 수 있음을 최초 명시함. 다만, 주주의 권리 남용 및 손실의 정도 등은 법률해석 또는 재판에서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주의 권리 보완(제57조, 제189조)
  - 주주는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열람,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 인원이 직무 이행 과정 중 법률 및 정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100% 지분보유 자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주주는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 3) 회사 지배구조 관련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직권을 명확히 구분(제59조)
  - 개정법은 주주총회가 이사회에 회사채권 발행에 대한 결의를 수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관련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직원대표 이사제도 도입(제68조)
  - 기존법은 국유투자 기업에만 직원대표 이사제도를 규정. 개정법은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반드시 직원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의무화함. 다만 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하고 감사회에 직원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직원대표를 두지 않는 예외를 인정함
- ‘감사위원회’ 설치 도입(제69조)
  - 개정법은 처음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회의 직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감사회 또는 감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함
- 감사 또는 감사회가 없는 지배구조 가능(제83조)
  - 규모가 작거나 주주 인원수가 적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명의 감사를 설치하여 감사회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전체 주주의 동의를 거쳐 감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4) 지배주주, 실제지배인, 이사, 감사, 임원의 의무 및 책임 강화

- 충실성 및 근면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완(제180조)
  - 이사, 감사, 임원에 대해 충실성 및 근면성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충실성 의무는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함. 근면성 의무는 직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관리자로서 통상적으로 기울이는 합리적인 의무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 이사, 감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관리규범 강화(제182조)
  - 이사, 감사, 임원이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경우, 거래와 관련된 사항 및 계약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이사, 감사, 임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가(제163, 제211조, 제226조)
  - 이사, 감사, 임원이 회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등록자본금 감자를 진행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이사, 감사, 임원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 이사, 임원의 배상책임 강화(제191조)
  - 이사 또는 임원이 직무 수행 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사 또는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

-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의 연대책임 신규 추가(제180조, 제192조)
-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 회사의 이사 직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성 및 근면성을 이행해야 함.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 이사 또는 임원에게 지시하여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이사 또는 임원은 연대책임을 져야 함

## 5) 상장기업의 조직기구 관련 규정 보완, 정보 공개 의무화

- 상장기업의 주주, 실제 지배인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정 추가(제140조)
- 상장회사의 주주, 실제 지배인에 대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및 공개 의무화를 규정하고 상장회사 주식의 차명계좌 보유를 명확하게 금지
- 상장기업의 지분통제 자회사는 해당 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제141조)
- 상장기업의 자회사는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상장기업의 자회사가 합병, 질권 등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적시에 상장회사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

## 6) 기 타

- 정부출자회사 관련 규정 강화(제168조~제177조)
- 개정법은 기존법 대비 정부출자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출자회사의 범위를 국유독자, 국유지배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유한회사로 명확히 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강조함
- 1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제한 완화, 1인 주식유한회사 설립 가능(제92조)
- 1인 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 후 유한책임회사 부분으로 편입. 또한 주식회사 설립 시 1인 주식유한회사의 합법성을 최초 인정함
- 청산의무인 및 청산팀의 의무책임 강화(제232조)
- 처음으로 이사를 청산의무인으로 규정하였고 청산의무인 및 청산팀이 법정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
- ‘좀비회사’ 강제등록말소제도 도입(제241조)
- 회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폐업 및 철수된 회사,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된 회사가 3년 내 청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등록기관은 강제말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신규 규정

### 3 시사점

#### 1) 자본금 납입 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기존의 회사법은 주주가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 출자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음. 2013년 등록자본금 ‘승낙납입제도’를 도입하면서 등록자본금에 대한 장벽을 대폭 낮추었음
  - \* 승낙납입제도 : 국가안전 및 개인의 생명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제도. 해당 주관부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허가증 취득 및 생산 또는 경영활동에 종사 가능. 또한 회사 주주들은 등록자본금 납입에 대한 출자금의 액수 및 납입 기한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음
- 동 제도는 당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였으나,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확대 신고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등록자본금으로 회사의 실제 규모나 자산을 판단할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개정법은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록자본금의 출자 기한(5년 내 완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해당 조항은 주요한 개정내용으로 손꼽힘
- 기존에 설립된 등록자본금 미완납 회사는 조만간 회사정관에 따른 출자 기한을 개정법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로 조정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세부 규정은 국무원이 후속 시행 규정에서 자세히 규정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적인 입법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본금을 허위로 확대하여 등록한 회사는 추후 감사의 절차를 통해 등록자본금을 재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회사 지배구조 관련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직원대표 이사제도 도입 또한 개정법의 주요 변경 사항임. 기존법은 국유투자기업만 직원대표 이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음. 개정법에서는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반드시 직원대표를 두어야 한다고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회사는 향후 중요사안 논의 및 의결권 시행에 대해 직원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게 됨
- 반면 동 제도 도입은 직원대표 이사로 인해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직원 수 300명 이상 규모의 회사로 직원대표 이사를 반드시 배정해야 하는 경우, 회사정관 및 이사회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보완 필요
- 회사가 직원대표 이사를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회를 설치하고 감사회에 직원대표 감사를 두어야 함

### 3) 경영진의 책임 강화

- 기존법은 실무적으로 이사, 감사, 임원의 충실성 및 근면성 의무에 대한 귀책이 어려웠음. 반면 개정법은 해당 의무가 구체화 됨에 따라 경영진의 충실성 및 근면성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
- 또한 이사와 임원은 본인이 충실성 및 근면성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 및 제3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추후 판례 및 사법해석 등에서 동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향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유의해야 하겠음

### 4) 주주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활용

- 주주는 기존의 회사정관, 주주총회 기록, 이사회 회의록, 감사회 회의록, 재무회계보고서 외에 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회계장부 열람 외 회계증빙의 열람도 요청할 수 있게 됨
- 또한 대주주 및 소주주를 모두 포괄, 소주주는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실제 운영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열람할 시 회계사사무소 또는 변호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주주의 권리를 보호함
- 중국에 투자를 진행한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은 중국 내 투자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주주의 알권리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